의안번호	제311호
의결연월일	2021.03.24.

- 예산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○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1. 02. 24. 임애민, 이상우, 강선구 의원

○ 회 부 일 자 : 2021. 03. 09.

○ 상 정 일 자 : 2021. 03. 17.

제268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(발의자 대표: 임애민)

가. 제안이유

○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에 근거하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실질적인 활동 지원으로 우리군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코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조례 목적과 정의 (안 제1조, 제2조)

○ 안전보안관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3조)

○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,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(안 제4조, 제5조)

○ 안전보안관의 활동과 지원 사항을 규정함.
(안 제6조, 제7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: 이춘근)

○ 「예산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 4항에 근거하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활동 지원으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관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·답변 요지

○ 생 략

5. 토 론 요 지

○ 없 음

6. 심 사 결 과

○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